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1. 중앙방역대책본부-1113(2020.10.13.)호와 관련됩니다.
-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아래와 같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니, 각 지자체 및 연합회·협회 등에서는 관련 관련단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개정(20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4.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10.4.)보고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4호, 제83조
- **과태료 부과 대상 등**:상세내용 <붙임> 참조
-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 2.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끝.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버스정책과장), 서울특별시장(주차계획과장), 부산광역시장(공공교통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인천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택시화물과장), 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 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 대전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울산광역시장(버스택시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 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 강원도지사(교통과장), 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대중교통과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국토교

주무관 시설사무관 비스정책과장 **나기호** 나**기호**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565 (2020. 10. 14.)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대중교통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5 팩스번호 044-201-5582 / zzangu@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